

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. 1. 15 선고 2019가단5099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

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20. 1. 15.

주 문

1. 피고는 C에게,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2/5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. 10. 19. 접수 제9997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와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2/5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. 10. 17. 접수 제993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)

판사이민영

별지